

수상레저기구 사용정지표지

1. 수상레저기구의 명칭 및 종류:
2. 수상레저기구 등록번호:

위 수상레저기구에 대해서는 「수상레저안전법」 제4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3항에 따라 사용정지를 명령합니다.

해양경찰서장
시장·군수·구청장

직인

주 의 사 항

1. 이 표지는 수상레저기구의 앞면·뒷면·왼쪽면 또는 오른쪽면의 잘 보이는 곳에 각각 붙여야 합니다.
2. 이 표지를 훼손하거나 그 부착 위치를 변경해서는 안 되며, 「수상레저안전법」 제43조제2항에 따른 정비 및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기 전까지는 이 표지를 임의로 제거해서는 안 됩니다.

※ 비고: 바탕은 흰색으로, 제목은 붉은색으로, 글자는 검정색으로 표시한다.

134mm×190mm[백상지 150g/㎡]